

충청북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제정조례(안)

심 사 보 고

농림수산위원회

1995. 5. 4.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· 제출 일자 : 1995년 4월 24일

· 회부 일자 : 1995년 4월 24일

다. 상정 일자 : 제113회 임시회

· 제 1 차 농림수산위원회 (1995. 4. 27) 상정 의결

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농정국장 박만순)

가. 제안 이유

- 충청북도 순환수렵장 운영·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, 야생 조수보호 증식과 국민의 건전한 수렵 활동을 도모하고, 순환 수렵장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고자 함.

나. 주요 골자

- 순환수렵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
 - 조수포획 승인 및 사용료 징수
 - 수렵 금지지역 지정

- 수렵 방법과 총렵 제한
- 수렵 조수의 범위 및 포획 조수의 신고
- 포획 승인등의 취소
- 수렵 안내 및 조수보호원의 배치
- 안전관리 및 수렵지도 단속등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이 병 생)

본 제정조례안은,

충청북도가 산림청의 승인을 얻어 수렵지역을 설정하여 순환수렵장을 운영할 경우에 수렵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

주요 내용은,

조수 포획 승인 및 취소, 수렵 지도단속, 수렵 금지 구역 및 수렵 방법과 총렵제한, 수렵 조수의 범위 및 포획 조수의 신고, 그리고 수렵안내등 순환수렵장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입니다.

본 조례안은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,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,

수렵장 운영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 하고자 하는 것으로

본 조례안은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"없음"

5. 검토 요지 : "없음"

6. 심사결과 : "원안 가결"

7. 소수의견요지 : "없음"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"없음"

9. 별첨

: 충청북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제정조례(안) 1부. "끝"